

## 관광대학원 선거관리위원회 회칙

### 제1장 : 총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회 회칙 제8조에 의한 총원우회 회장 및 부회장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선거권)

선거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며 원우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선거권이 부여된다. 휴학 또는 정학 중에 있거나 해당학기에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는 선거권이 없다.

#### 제3조 (입후보자)

1. 선거공고일 현재 2학기 혹은 3학기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2.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고 재학 중 원우회비를 납부한자
3. 재학생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4. 총원우회 원우회장, 부회장은 공동 입후보(런닝 메이트제: 정1,부1)한다.  
(단독 입후보 불가)

#### 제4조 (선거방법)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선제를 원칙으로 한다.

#### 제5조 (선거시기)

1. 선거는 매 학년 2학기 중에 실시한다.(11월~12월초)
2. 2학기 중에 실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가 해제되는 최대한일 내 실시한다.

#### 제6조 (선거관리비용)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원우회비에서 지출한다.

1. 출마 후보자의 비용은 출마 후보자가 부담한다.

### 제2장 : 선거관리위원회

#### 제7조 (구성)

1.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둔다.
2. 선관위는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정한 관리를 위해 원우회장은 원우회 자문 위원 중에서 2인, 원우회 임원 또는 재학생 중에서 2인을 추천, 구성토록 한다. 선관위원장은 최고 연장자 또는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3. 선관위 실무책임을 맡아 선거관리 실무 총책을 담당할 부회장은 당연직 선거관리 위원으로 선임되며 선관위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4. 선거관리 위원은 중립 의무가 있으며 출마 후보의 선거운동, 자문, 후원을 할 수 없다.

#### 제8조 (직무)

선관위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선거일시 결정 공고
2. 입후보자 등록 및 자격확인
3. 투표 및 개표
4. 선거 및 입후보자에 관한 공시
5. 당선자의 선포 및 공고

## 6.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

### 제9조 (회의)

1.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유지되며, 당선자 공고 후 자동 해제된다.
2. 선관위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10조 (대리)

위원 유고시에는 원우회장의 추천으로 대리인을 지명한다.

## 제3장 : 후보 등록

### 제11조 (후보등록)

원우회장. 부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및 재학증명서를 후보 등록기간 내에 선관위 부위원장에게 제출한다.

1. 후보 등록신청서
2. 재학 증명서

### 제12조 (자격심사)

선관위는 등록된 후보 등록 신청서를 이용하여 후보 자격을 심사하고 이를 관광대학원 원우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1. 공동입후보제(러닝메이트)이므로 후보자 1인의 결격사유 발생 시 후보등록을 취소한다.
2. 결격사유가 발생 시 해당 후보자는 다른 사람과 재입후보 할 수 없다.

## 제4장 : 선거 운동

### 제13조 (기간)

1. 선거운동은 자격심사에 관한 공고 이후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2. 별도로 선거 기간을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명시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4조 (제한)

선거운동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선관위에서 1차 경고 후에도 불응 시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강의실, 도서관, 식당 등 실내에서의 선거운동
2. 무단 또는 규정 이상의 대자보, 선전물 제작. 배포. 부착행위
3. 확성기, 메가폰, 북, 팽과리 등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기타 선관위가 정한 사항

### 제15조 (선거운동)

선관위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선거홍보를 할 수 있다.

1. 관광대학원 원우회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글 게시: 2회/후보당
2. 문자 메시지 발송: 2회/후보당(연락처는 원우회에서 제공)
3. 대자보 부착: 관광대학원 내 2곳 부착 가능  
(전지 2P 내/원우회실 부착 금지)
4. 합동 유세 : 투표일에 1회에 한해 합동 유세 시행(선거관리 위원회 주관)
5. 선전물 제작, 배포 부착 : 배포는 학과별 운영부장을 통해 재학생 전체에 대해서 배포 가능하고 부착은 원우회실 내에만 허용
6. 관광대학원 건물 입구 밖에서의 선거 운동은 가능하나 확성기, 피켓, 메가폰 사용은 불가하며 제작물 배포(본조 5.항 선전물과 동일) 및 구호 사용만 가능

## 제5장 : 투, 개표 및 당선 결정

### 제16조 (투표시간)

투표시간은 선관위에서 정하여 공고한다.

### 제17조 (투표방법)

1. 투표는 본인 인증 후(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투표한다. 위 4가지 이외의 확인 방법은 불가하며 본인 인증이 불가능할 경우 투표는 불가하다.
2.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 제18조 (개표)

개표는 투표 완료시 선거관리 위원 3명 이상 참석하여 개표한다.

(3명 미만 시 불가)

### 제19조 (투표의 효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는 무효로 한다.

1.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투표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경우(대리 투표)
2. 후보자를 구별하는 구별선 또는 구별선 밖에 기표한 경우  
(무조건 무효표로 한다)

### 제20조 (당선결정)

1. 원우회장 선출은 재적 대학원생 1/3 이상의 투표로 성원되며 후보자 중 최고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2. 투표참여 인원이 1/3 미달 시 개표 전 입후보자 상호간의 합의가 있을 때는 유효한 것으로 하며, 동표 시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3. 단일 후보 등록 시 찬반 투표를 실시하며 재적 회원 1/4이상의 투표와 투표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4. 원우회장에 당선되면 부회장도 당선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사 2인과 학과별 대표 및 운영부장은 원우회장 당선자가 임명한다.
5. 선관위원장은 투표결과를 원우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제6장 : 벌칙.재선거.보궐선거

### 제21조 (벌칙)

선관위는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후보자격 박탈 (등록취소) 또는 당선 취소를 할 수 있다.

1. 금전, 금품을 배포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폭력, 협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3.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4. 추천서 기타 선관위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5. 타 후보의 정당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저해했다고 인정되거나 선거규정 또는 선관위의 지시와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제22조 (재선거)

다음의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인이 없는 경우
2. 선거가 전부 무효인 경우

3.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 또는 근신이상의 징계를 받은 때

제23조 (보궐선거)

임기 중 원우회장의 궐위 시에는 재선거를 실시하되 원우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궐위 시에는 원우회장이 임명하며 임명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를 임기로 한다.

제24조 (회칙보완)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에서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

본 선거관리 회칙 개정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본 선거관리 회칙은 2011년 5월 4일 최초 제정하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본 선거관리 회칙은 2012년 6월 25일 개정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본 선거관리 회칙은 2014년 4월 16일 개정하여 효력을 발생한다.